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006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임은경, 박중수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C,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6. 6.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각 “33,975,714원과 그 중 3,124,28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2018.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30,851,428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7.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2회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회 발행하여 주었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이 채무 연체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2017. 12. 21. 10,935,000원, 2018. 3. 29. 107,98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16. 6. 18.경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처)와 C, D(자녀들)은 2016. 6. 18.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아파트 I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망인 소유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0012호로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8.경 망인의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451,970,000원을 변제하고, 2016.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60,000,000원,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상속개시 및 협의분할 시점인 2016. 6. 18.경을 기준으로 피고와 C, D이 알고 있던 망인의 적극재산은 ① 포항시 북구 K 소재 5필지 토지 중 각 2/13 지분 시가 합계 80,000,000원 상당, ② 이 사건 아파트 중 6/10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504,000,000원 상당, ③ 현금 및 예금채권

8,852,029원, ④ E 발행의 보통주식 980,000주 시가 49,000,000원 상당, ⑤ 보험금 26,627,189원, 적극재산 합계 668,479,218원이었고, 망인의 소극재산은 ①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1,970,000원 상당, ② L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상당, ③ M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상당, 소극재산 합계 621,970,000원이었다.

마. 이후 N이 2016. 8. 8.경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망인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028호1) 로 피고와 C,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와 C, D은 2016. 9. 15.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3.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2016느단51759).

바. 원고는 2018. 4. 18. E, 피고,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3. “원고에게, 피고 C, D은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E과 연대하여 각 34,037,344원과 그 중 각 3,124,285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피고 C는 2018. 6. 6.까지, 피고 D은 2018. 5. 3.까지 각 연 1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각 30,851,428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7.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가단24491).

사. 이에 원고는 피고와 C, D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6. 6. 18.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속인인 피고와 C, D은 2016. 6. 18.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협의분할할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2016. 9. 15.자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 D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상 이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638,848,000원(= 변론종결 무렵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729,600,000원 - J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451,970,000원) 중 적은 금액인 위 구상금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및 C,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후인 2016. 8. 8.경 N으로부터 그가 망인에 대해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해 8. 31. N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후인 2016. 9. 15.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및 C, D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C, D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및 C,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3층 호 133.41㎡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11939.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바율 : 11939.6분의 52.61
 (위 부동산 중 지분 10분의 6)

1)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망인의 채무 5억 원 중 296,479,600원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여, 남은 망인의 채무는 203,520,400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 및 C, D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